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8419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9.12.16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179호

★차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상임감사			

---

##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---

2019.

#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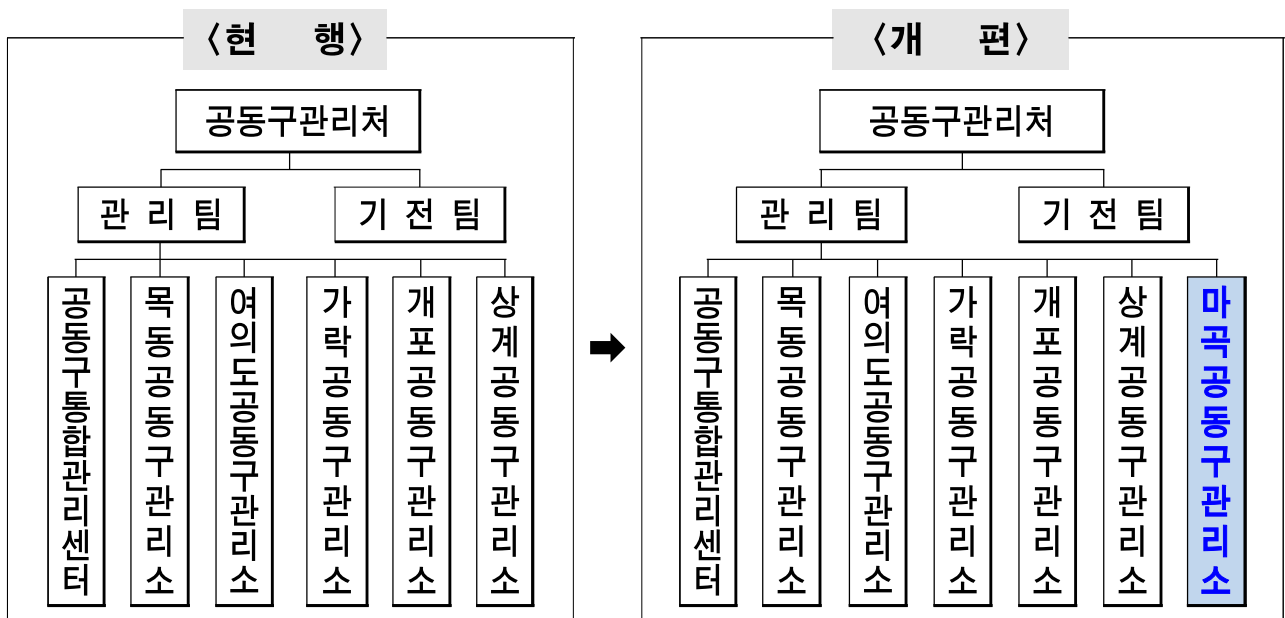
(제 안 요 지)

## 1. 개정사유

- 가. 마곡공동구 신규대행관련 서울시 정관 변경 인가('19.12.5.)에 따른 '현장관리소' 단위 기구 신설 및 직급·직렬별 정원 반영
- 나. 안전처 및 홍보마케팅실 기구 개편 관련 직제규정 개정(제533회 임시이사회 의결, '19.11.4.)에 따른 내규 정비
- 다. 청사 사무공간 확대에 의한 청소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조정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구 개편 및 조문 정비 (안 제3조 제1항의 '별표1', 제10조, 제11조, 제32조, 제38조)
  - 안전처 및 홍보마케팅실 기구 개편에 따른 '처(실·원)'의 직제순서 조정
  - 공동구관리처 관리팀 산하 "마곡공동구관리소" 신설
    - 현장관리소 증설 : 6개 관리소 → 7개 관리소 (+1)



## 나. 정원 조정 (안 제3조 제1항의 '별표2')

### ○ 「공동구관리처」 직급·직렬별 정원 반영 (증 12명)

- 3급 +1명(시설 1), 5급 +2명(설비 2), 6급 +4명(시설 2, 설비 2), 7급 +5명(시설 1, 설비 4)

### ○ 「총무처」 청사 청소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 (부서 정원 내)

- 8급 시설관리 +2명 (≡ 8급 설비 △2명)

#### 청사 청소업무 증가

- ❖ 기존 임대공간에 대한 사무공간으로의 직접사용에 따라 청소 등 관리범위 증가
  - 2019.3.27. (주)엠앤디이종합건축사 임대계약 해지(4~6층, 2,734.19㎡)
  - 공단 사무실, 회의실, 복지공간 등으로 재조성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도모
- ❖ 청사 청소인력 확보 필요: 시설관리 +2명 ≡ 1인당 관리규모 1.6층 유지

구분	현행	변경	증감
관리규모	총 21층 (지상4~6층 제외)	총 24층 (지하4층~지상20층)	+3층
청소인력	총 13명 (시설관리 6, 촉탁직 7)	총 15명 (시설관리 8, 촉탁직 7)	+2명
인당 관리규모	1.6층/1인	1.6층/1인	-

### 【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】

구분	총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7급(보)	8급
현행	3,536	6	26	45	107	308	498	364	288	533	1,361
개정	3,548	6	26	45	108	308	500	368	293	533	1,361
증감	+12	-	-	-	+1	-	+2	+4	+5	-	-

### 【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 】

구분	총계	임원 1~2급	사 무	시 설	설 비	조 경	특 수	조 사	조 무	상 수 도	사 회 복 지	사 설 관 리	자 커 관 리
현행	3,536	77	515	278	651	105	32	59	288	430	562	354	185
개정	3,548	77	515	282	657	105	32	59	288	430	562	356	185
증감	+12	-	-	+4	+6	-	-	-	-	-	-	+2	-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근거

- 서울시설공단 정관 변경 인가(市건설혁신과-15499호, '19.12.5.)
-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사회 의결(제533회 임시이사회, '19.11.4.)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##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, 제11조를 제32조로, 제32조를 제10조로 한다.

제3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공동구관리처 관리팀 산하에 공동구통합관리센터, 목동공동구관리소, 여의도공동구 관리소, 가락공동구관리소, 개포공동구관리소, 상계공동구관리소, 마곡공동구관리소를 두며. 각 관리소장은 1급 내지 2급 또는 사무·시설·설비직렬 3급 내지 4급으로 보한다.

“별표1” 및 “별표2”를 각각 별지의 “별표1” 및 “별표2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인재원) ① ~ ② (생략)	제11조(인재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안전처) ① ~ ② (생략)	제32조(안전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제32조(홍보마케팅실) ① ~ ② (생략)	제10조(홍보마케팅실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공동구관리소) ① 공동구관리처 관리팀 산하에 공동구통합관리센터, 목동공동구관리소, 여의도공동구 관리소, 가락공동구관리소, 개포공동구관리소, 상계공동구관리소를 두며, 각 관리소장은 1급 내지 2급 또는 사무·시설·설비직렬 3급 내지 4급으로 보한다. ② (생략) 1. ~ 7. (생략)	제38조(공동구관리소) ① 공동구관리처 관리팀 산하에 공동구통합관리센터, 목동공동구관리소, 여의도공동구 관리소, 가락공동구관리소, 개포공동구관리소, 상계공동구관리소, <b>마곡공동구관리소</b> 를 두며. 각 관리소장은 -----,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1. ~ 7. (현행과 같음)